

사고보험금(급여금)청구서



* 우편접수 주소: 우) 07208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3층 에이원손해사정 미래에셋생명팀(대표전화1588-0220)
* 보험금청구를 위한 필수동의서를 작성하여 사고보험금(급여금) 청구서 및 청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작성)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원확인증 (청구인)	☐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	년 월 일	발급기관명 :	
	☐ 운전면허증	운전면허번호 :	- - -	일련번호 :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휴대폰
주 소*					자택/직장
					E-mail
직장명		하시는일(구체적으로)		문자발송안내	☐ 신청 ☐ 미신청 *지급병명안내

보험수익자 정보 (보험대상자(사고자)와 동일한 경우 “상동”으로 기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휴대폰
주 소* (우편수령자)	☐ 자택 ☐ 직장 ☐ 기타				자택/직장
					E-mail

은 행*		계좌번호*	☐ 자동이체 계좌 (수익자 본인 명의 계좌)		
심사과정 안내*	문자발송안내 ☐ 신청 ☐ 미신청 * 단계별 진행사항을 수익자에게 문자 발송 지급지연안내 ☐ 신청 ☐ 미신청 * 지급지연 안내를 수익자에게 전화드림 지급내역안내 ☐ 우편 ☐ E-mail ☐ 미신청 * 지급내역 안내를 선택한 방법으로 발송				
사고연금신청	☐ 연금일시금 (일시금은 약관에 따라 정해진 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 자 동 연 금 (확정 지급분에 한하여 연금발생일에 상기 계좌로 자동 지급하여 드립니다.) ※ 생존확인이 필요하거나, 미성년자, 수익자 변경 및 보험금 압류·양도시 등 자동송금제외				

청구세부내용 (해당사항에 ☒ 하여 주세요)

청구내용*	☐ 입원 ☐ 수술 ☐ 실손(의료비) ☐ 통원 ☐ 진단 ☐ 장해 ☐ 사망 ☐ 기타 ()		피보험자 :	서명(인)
청구사유*	☐ 일반질병 ☐ 일반재해 ☐ 교통재해 ☐ 자살 ☐ 기타 ()		수 익 자 :	서명(인)
사고내용*	■ 사고일시 : 년 월 일 / 시 분 ■ 사고장소 : ■ 사고경위(6하원칙에 맞게 기재)		【 보험금지급내역 FC 제공여부 】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 (질병분류코드, 수술명, 사유발생일자, 입·퇴원일자, 지급유형, 지급금액)을 담당 FC 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선택사항) ☐ 동의 ☐ 미동의	
병 명*	■ 청구병명 :		【 변제확인서 】 본인은 본 청구권의 보험금 수령과 관련하여 차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관하여 변제는 물론 이에 수반되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 질것을 확인합니다.	
실손타사 가입여부	실손보험 타사 가입여부 (☐ 가입) ■ 보험회사 :		수 령 인 : 서명(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 해당 (보험대상자인 경우) ■ 의료급여 수급권자 실손보험료 할인제도를 운영중임 ■ 해당 여부 및 구비서류 문의 등: 관리지점 및 고객센터		수익자와의관계 () ※ ‘책임’ 자필 기재 변제확인서는 수익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가 작성	

※ 상기 작성된 고객정보와 당사가 보유한 고객정보가 다른 경우, 사고보험금(급여금) 청구서상의 고객정보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보험금 접수 및 지급절차에 관한 설명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제3항, 제4항 등 법령에 따라 심사 담당부서(연락처) 및 예상 심사기간과 지급절차에 대한 아래의 설명을 듣고, [별지]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동의합니다. ① 청구하신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단,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지연될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지연사유를 별도로 설명 드리고 보험금 지급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가입시기에 따라 기납입보험료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지결정 이전의 납입한 보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③ 보험금 지급심사 등 업무 중 일부는 손해사정(주)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허위위임, 고의사고, 사고조작, 피해과장 등)는 범죄행위로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확인
--	-----------------------------

대리청구 위임장 (본 보험금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청구인의 범위 : 수익자, 피보험자

위임받는자	(성명)	관계		FC 접수시작성	성명 : (코드 :)
청구인(위임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임일자	20 년 월 일
통화대상자		녹취자		녹취확인	20 년 월 일(시 분 초)

※ 대리 청구시 추가제출서류 : (직계가족청구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제3자 청구 : 위임인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원본)

* 접수일자 : 20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인) (사고자와의 관계 :)
-------------------	-----------------------------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대면용]



■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관련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고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 정보 조치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보험금지급 · 심사(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 및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보험금지급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 금융거래(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 · 수납을 위한 금융거래 신청, 자동이체 등 접수) 관련 업무

• 수집 · 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계좌정보
-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신용)정보[경찰,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으로 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 이용 기간

- 수집 · 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일* 후 5년까지(단, 거래종료일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 · 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 · 이용하며, 별도 보관)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여부	피보험자 동의 ☐	수익자 동의 ☐
-----------------------	----------------------------------	---------------------------------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 집중기관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개인(신용)정보 조회목적

- 보험금지급 · 심사(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 및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사고정보 포함), 질병 및 상해에 관한 정보

• 조회동의 유효 기간 및 조회자(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 이용 기간

- 수집 · 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일* 후 5년까지(단, 거래종료일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 · 이용하며, 별도 보관함)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여부	피보험자 동의 ☐	수익자 동의 ☐
------------------	----------------------------------	---------------------------------

* 거래종료일이란 당사와 거래 중인 모든 계약(보험, 융자, 수익증권, 퇴직연금)관계의 종료(계약의 만기, 해지, 해제, 취소 등) 및 채권채무관계가 소멸(소멸시효 완성, 변제 등) 된 날을 뜻합니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공공기관,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위탁사업자)
- 보험회사 및 업무수탁자 등 :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국내·국외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보험금 지급심사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대행포함) 보험사고 조사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자 (보험사고 접수, 보험사고 조사 업체, 손해사정업체, 병원 및 의료기관 의사, 변호사, 위탁 콜센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고객안내발송 대행 업체등), 금융거래 관련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공공기관 등 : 보험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보험에 한함)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
- 보험회사 및 업무수탁자 등 :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고객안내 자료제작 및 발송에 필요한 업무, 의료심사 및 자문소견, 진료기관확인, 법률자문 및 소송관련 업무, 진료비심사, 금융거래 업무(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단, 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달성할 때까지(최대 거래 종료일* 후 5년까지)

※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http://life.miraeasset.com] 에서 확인할 수 있음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피보험자 동의 ☐	수익자 동의 ☐
------------------	----------------------------------	---------------------------------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기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민감정보(질병·상해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수집·이용, 조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질병·상해정보 처리	피보험자 동의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운전면허증번호	피보험자 동의 ☐	수익자 동의 ☐

20 년 월 일

※ 활용되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다수일 경우 (다수의 수익자 및 다수의 상속인 등) 아래 수익자 서명란에 전원 서명 바랍니다.

(계약관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1인 또는 후견인이 서명 바랍니다.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할 경우 피보험자란 서명으로 수익자의 서명을 대신합니다.)

피보험자	(서명)	친권자	(부)	(서명)	(모)	(서명)
수익자	(서명)	후견인				(서명)



보험금 심사 절차 안내문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보험금 청구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방법

- 제출방법 : 인터넷, 모바일, 팩스, 우편, 방문, FC 찾아가는 서비스로 접수 가능합니다.
- 소액 보험금 청구시 병원 및 사고사실 확인 서류 등은 사본으로 제출이 가능하나 필요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조사 요청에 대한 동의

- 표준약관 규정에 의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여부' 및 '보험금지급여부 결정'을 위한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손해사정 및 보험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

-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 185 조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 등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 됩니다.
-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①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당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②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가 보험사고 접수완료 후 7 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래에셋생명미 담당하며 보험계약자 등이 ③당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결과에 승복하지 아니한 때, ④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비용을 부담합니다.

손해사정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 손해사정사가 작성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 즉시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 9-20 조 제 4 항)

보험금 지급지연 및 부 지급 결정에 대한 안내

-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그 사실을 문자메시지 및 우편 등으로 안내하여 드리고, 약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약관에서 정해진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가지급제도 신청은 당사 고객센터(☎1588-0220)로 가능합니다.
-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의료심사

-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 (사망, 장애, 입원, 수술, 진단, 실손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3 자를 정하고 그 제 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 자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중환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기간 치료비 분담 지급(비례보상 적용)

- 의료비 실비를 보장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실손보험계약은 생명보험협회 (<http://www.klia.or.kr>) 및 손해보험협회(<http://www.knia.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보험금 청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당사의 보험금 지급심사결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고객센터(1588-0220)로 유선 통보하시거나, 당사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및 우편으로 통보하여 주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49 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 2 차 13 층 에이원손해사정 미래에셋생명팀 / 우편번호 : 07208

보험금심사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담당부서 : 보험금서비스팀 (문의처 : 고객센터 1588-0220 ⇄ 보험금관련 서비스 2 번)
- 담당자는 접수완료 후 확정되며 당사 홈페이지 및 담당 FC,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분쟁 조정절차 및 피해 구제사항 안내

- 보험계약 및 사고보험금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으로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안내 내용

- 상기 절차에 따라 지급심사가 이루어지며, 접수하신 보험금 청구서류가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를 추가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만일, 보험금 청구서류에 허위가 있다면 관련법률 및 약관규정에 의거하여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심사 및 보험사고조사를 위해 일부 업무를 손해사정사 등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당사 홈페이지(<http://life.miraeasset.com>)에 접속하시면 보유계약확인, 진행현황 및 지급내역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사이버창구 → 보험 → 사고보험금 청구 → 사고보험금 접수현황조회」 및 「고객센터 → 사고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



구 분		청구서류		발급처
공통	필수	① 사고보험금청구서(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② 청구인 신분증 사본		회사양식
	수익자 관련추가	1. 수익자 (필요시)추가서류 ①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 가족관계 확인 서류(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등) *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직계가족의 경우 세부내역 참고 ②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동의서		주민센터
	재해 입증서류 (택1)	2. 재해사고시 사고입증서류 ①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②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③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④ 의료사고 등 법원판결 : 법원판결문		

※ 가족관계 확인서류는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사이트 민원24시(www.minwon.go.kr)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의료기관에 대한 서류별 발급비용은 해당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홈페이지(병원·약국·비급여진료비정보) 참고 가능합니다.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구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당사 홈페이지(<http://life.miraeasset.com>)를 접속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